



사업자등록증

(법인사업자)

등록번호 : 209-81-51497

법인명(단체명) : 금호정보통신 주식회사

대표자 : 정범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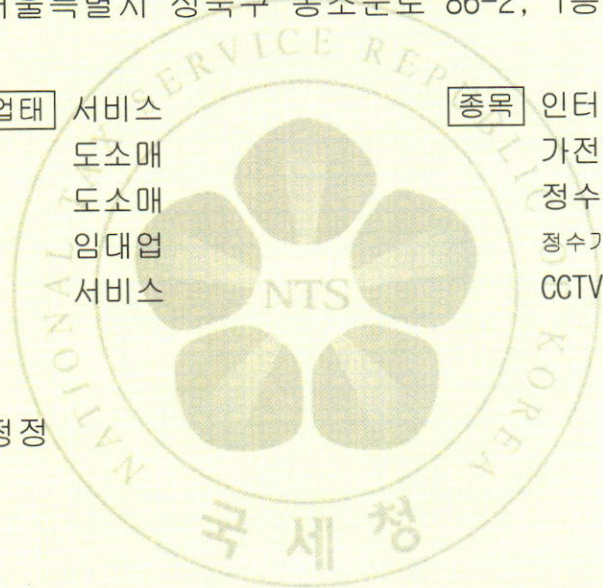
개업연월일 : 2010년 08월 12일 법인등록번호 : 110111-4410455

사업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86-2, 1층(동소문동5가)

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86-2, 1층(동소문동5가)

사업의종류 :	<input type="checkbox"/> 업태	서비스 도소매 도소매 임대업 서비스	<input type="checkbox"/> 종목	인터넷및이동전화가입자모집 가전제품 정수기 정수기, 공기청정기, 비데 등 생활가전 CCTV 설치 및수리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발급사유 : 정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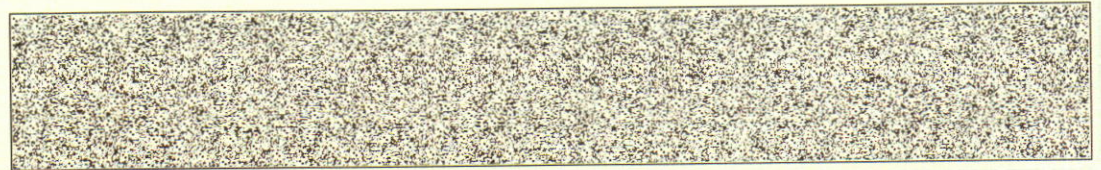


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: 여() 부(✓)

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:

2018년 11월 12일

성북세무서장



▶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사업자	과세기간	확정 신고대상	확정신고납부기간
일반과세자	제1기 1.1.~6.30	1.1~6.30.까지 사업실적	7.1~7.25.
	제2기 7.1.~12.31.	7.1.~12.31.까지 사업실적	다음해 1.1~1.25.
간이과세자	1.1.~12.31.	1.1.~12.31.까지 사업실적	다음해 1.1~1.25.

▶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간이과세자는 7월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/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합니다.[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·납부(4월, 10월) 및 확정 신고·납부(7월, 다음해 1월)]
 ※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「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→ 성실신고지원 → 부가가치세」를 참조 바랍니다.

▶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(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)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

▶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※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「국세청홈텍스(www.hometax.go.kr) → 성실신고지원 → 종합소득세」를 참조 바랍니다.

▶ (신청·제출, 세금신고·납부, 조회/발급, 국세증명 발급) 대부분의 국세 사무를 인터넷(hometax.go.kr)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▶ (국세증명) 인터넷(홈텍스, 민원24)과 모바일홈텍스, 읍·면·동사무소 민원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▶ (전화상담) 문의사항이 있으면 126으로 전화하신 후 아래 번호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					2	3	4
(1)	(2)	(3)	(4)	(5)			
현금영수증	전자 세금계산서	신고납부 증명발급	학자금상환	연말정산 간소화	세법상담	세금고충상담	탈세 등 각종제보

※ 상담시간: 월~금 오전 9시~오후 6시(탈세신고는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.)

▶ (인터넷상담) 홈텍스(www.hometax.go.kr)로 접속하여 상담/제보→ 상담사례를 검색한 후 하단 「인터넷 상담하기」를 이용하여 상담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▶ (4대 사회보험신고)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은 가까운 담당기관들 중 한 곳에서 통합신고 가능하며, 인터넷(www.4insure.or.kr)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구분	국민연금	건강보험	고용보험	산재보험
적용사업장	근로자 1명 이상 고용사업장			
보험료부담	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/2씩 부담	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/2씩 부담	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/2씩 부담. 기타 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	사업주가 전액부담
납부방법	월납	월납	월납 (건설업 및 별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)	
담당기관	국민연금공단	건강보험공단	근로복지공단 (고용노동부 고용센터)	근로복지공단
상담전화	국번없이 1355	1577-1000	국번없이 1350	1588-0075

▶ (그 밖에 사업시 알아야 할 세무정보) 세무서에서 배부해 드리는 「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」 책자를 자세히 읽어보거나,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및 홈텍스(www.hometax.go.kr)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